

CR 2010 - 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2010. 11

CR 2010 - 06

CEO
Report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2010. 11

최형선

보 험 연 구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I. 검토배경	1
II. 국내 신용카드업 현황	2
1. 신용카드업 일반 현황	2
2. 신용카드 이용 추이	3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현황	5
III.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구조	7
1. 양면시장	7
2. 역선택	8
3. 거래구조	9
가. 3당사자 체제	9
나. 4당사자 체제	10
IV. 신용카드 규제	12
1. 우리나라	12
2. 해외 주요국	13
가. 미국	13
나. 호주	14
다. 영국	16
V.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개선논의	17
1. 신용카드 규제	17
2. 가맹점수수료	18
3.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	20
가. 가맹점수수료 인하	20
나. 장기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대상 제외	21
VI. 시사점 및 결론	23
<참고문헌>	25

I. 검토배경

- 최근 일부 생명보험회사¹⁾가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를 수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들의 협상결과에 관심이 집중
 -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다시 첨예화됨.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경우 그동안 크게 발전하는 가운데 신용카드시장의 제도, 가맹점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개선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정부가 조세투명화 등을 위해 실시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해 크게 발전
 - 그러나 신용카드시장을 규제하는 여전법, 높은 수수료(가맹점수수료, 카드이용수수료)와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장구조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용카드시장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보험회사의 신용카드 수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지금까지 있었던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개선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관련된 신용카드 수납,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1)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이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결제 대상 상품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상 중

Ⅱ. 국내 신용카드업 현황

1. 신용카드업 현황

-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 중 두 가지 이상을 하는 사업²⁾
 - 부대업무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가 포함됨.
- 우리나라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서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 32개 사업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임.
 - 신용카드 사업자는 전업카드사와 겸영카드사로 구분할 수 있고, 전업카드사는 다시 은행계와 기업계로 겸영카드사는 은행계와 유통계로 구분 가능
 - 7개 전업카드사 중 4개사는 은행계이고 3개사는 기업계이며 25개 겸영카드사 중 14개사는 은행계이고 11개사는 유통업계임.

<표 1>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구분	사업자수	회사명(회원/제휴)	
전업 카드사 (7)	은행계	4	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기업계	3	삼성, 현대, 롯데
겸영 (25)	은행계	14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유통계	11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주 : 1) 2009년 12월 기준

2) 산은캐피탈: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2002.1)

3) LG카드: 신한카드와 통합(2007.10)

4) 하나SK카드: 하나카드로 출범(2009.11) 후, 하나SK카드 사명 변경(2010.2)

자료 : 여신금융협회

2) 여전법 제2조2항, 제13조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신한, 삼성, 국민, 현대 등 4개 카드사가 카드발급수와 이용액에 대해 60%를 점유함으로써 과점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³⁾

<표 2> 신용카드시장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구 분	신한	삼성	국민	현대	집중률(CR3)	집중률(CR4)
발급카드수	29.89	11.72	11.60	8.55	53.20	61.75
이용액	23.09	10.29	16.38	8.41	49.75	58.16

주 : 1) 발급카드수, 이용액은 2007년말 기준임.

2) CR3=신한+삼성+국민, CR4=CR3+현대

3) 일반적으로 CR3(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CR4가 40~60%의 수준을 보이면 과점적 구조로 판단

자료 :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2008)

2. 신용카드 이용 추이

-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에 힘입어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⁴⁾

- 신용카드 이용실적⁵⁾은 2000년 77.9조원이었으나 이후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2009년 303.9조원으로 증가

-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총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00년 148.8조원에서 2009년 472조원으로 증가

-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 신한, 삼성, 국민, 현대카드의 시장 집중율은 2007년 이전 47%였으나 LG카드가 신한카드에 인수·합병된 이후 58%로 상승

4)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19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00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사은품 증정,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

5)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실적 제외 금액

24.9%에서 2009년 52.6%로 2배 이상 증가

<표 3>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00	2003	2006	2009
카드대출계(A)	100.1	277.0	103.4	99.4
- 현금서비스	89.0	239.9	91.6	81.5
- 카드론	11.1	37.0	11.8	18.0
신용판매(B)	48.8	240.3	278.9	372.6
- 일시불	33.7	189.9	229.9	300.9
- 할부	15.1	50.4	49.0	71.7
총카드이용금액(A+B)	148.8	517.3	382.3	472.0
이용금액(C) ¹⁾	77.9	170.5	214.8	303.9
민간소비지출(D)	312.3	389.2	453.9	577.4
C/D	24.9	43.9	47.3	52.6

주 : 1)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실적 제외(기업구매카드제도 2000년부터 도입)
 자료 : 여신금융협회, 금융통계시스템

□ 신용카드 발급수와 신용카드 가맹점수도 빠르게 증가

- 카드발급수는 2000년 5,780만개에서 2009년 1억 690만개로, 동 기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발급수는 2.6개에서 4.4개로 증가
- 신용카드 가맹점도 2000년 약 860만개였던 것이 2009년 약 1,650만개로 약 2배 가까이 증가⁶⁾

<표 4>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 추이

(단위: 천개, 개, 천개)

구 분		2000	2003	2006	2009
카드수	전체	57,881	95,517	91,149	106,993
	경제활동인구 1인당	2.6	4.1	3.8	4.4
가맹점수		8,611	16,949	17,037	16,568

자료 : 여신금융협회

6) 신용카드 가맹점수는 개별 신용카드사와 개별적인 계약을 한 수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제로 신용카드를 수납하는 가맹점 수는 약 150만개로 추정

-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의 이용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의 이용액은 아직 정체되거나 감소)

<표 5> 지급수단별 이용실적

(단위: 십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용카드	352.5	360.7	371.0	403.6	456.4	466.4
직불카드	0.1	0.2	0.1	0.1	0.1	0.0
체크카드	2.6	7.8	12.3	18.8	26.8	36.5
선불카드	0.3	0.5	0.7	0.9	1.0	1.3

자료 : 한국은행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현황⁸⁾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필수재 관련 업종에는 낮은 수수료, 유흥 및 사치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음.
 -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2008년을 기준으로 2.22% 수준인데 2000년 2.92%에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

7)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 시 은행 잔액 한도 내에서 즉시 결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 등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8) 한국은행(2010),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참고

<표 6>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 추이

(단위: %)

연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수료	2.92	2.29	2.33	2.36	2.32	2.28	2.22

자료 :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한국은행(2010) 재인용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60~3.20%이며 이는 할인점, 백화점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귀금속, 유흥 및 사치업에 비해 낮은 수준

<표 7> 현재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단위: %)

업종	수수료	업종	수수료
금융 및 보험업	2.60~3.20	귀금속	2.70~3.60
할인점	1.70~2.70	패션잡화	2.00~3.60
백화점	2.00~2.88	숙박	2.00~3.60
슈퍼마켓	1.80~3.30	유흥 및 사치업	2.70~4.50

자료 : 여신금융협회

- 보험업에 대한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3.00%로 가정할 경우 FY2008 보험회사가 가맹점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2,625억원 추정됨.
- FY2008 생명보험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수입보험료의 약 1.70%인 1조 2,500억원⁹⁾¹⁰⁾으로 약 375억원을 가맹점수수료로 지급
- FY2008 손해보험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수입보험료의 약 20%인 7조 5,000억원¹¹⁾으로 약 2,250억원을 가맹점수수료로 지급

9) 초회보험료를 제외한 계속보험료에 대한 수치

10) FY2008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73조 5,610억원

11) FY2008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37조 4,950억원

Ⅲ. 신용카드 시장의 특징 및 구조

1. 양면시장(Two-Sided Market)¹²⁾

-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으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등 두 종류의 다른 고객을 동시에 상대
 - 양면시장은 하나의 거점(platform)을 중심으로 두 그룹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시장
 - 거점은 두 그룹에 속한 회원의 수에 따라 비대칭적인 가격전략(asymmetric pricing strategy)을 활용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
 - 두 거래상대방 사이에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에 신용카드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협상력 따라 비대칭적으로 설정하게 됨.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 대신 신용카드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신용카드사에 지불하게 됨.¹³⁾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배경으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
 - 신용카드 이용자는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가맹점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로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간접효과 존재

12) 장선구(2008)를 참고

13) 전진(2009)

2. 역선택(Adverse Selection)¹⁴⁾

- 신용카드시장에서는 신용이 높은 고객보다는 신용이 낮은 고객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 가능
 - Ausubel(1991)는 연체위험이 높은 신용카드 이용자들만이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에 반응하여 추가적으로 차입하기 때문에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하방경직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¹⁵⁾
 - 연체위험이 높은 고객은 자금조달이 쉽지 않으므로 연체위험이 낮은 고객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역선택이 발생 가능
 - 역선택 문제로 인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높게 유지되면서 시장금리 변화에 하방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됨.
- 신용카드사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현금서비스 수수료 또는 할부금리 인하 시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가격경쟁보다는 비가격경쟁에 집중
 - 신용카드사가 확보한 신용카드 회원은 타 카드사로 이동 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이동이 쉽지 않음.
 - 신용카드 회원은 대출금리, 현금서비스 등 정보 확보 시 탐색비용(search costs)과 타 카드사로 이동 시 카드사용 한도 축소, 높은 카드수수료 적용 등의 전환비용(switch costs)을 부담해야 함.¹⁶⁾

14) 윤성훈(2003), 정찬우(2005), 윤성훈·이경아(2009) 참고

15) Park(1997), Black and Morgan(1998), Ausubel(1999), Gross and Souleles(2001a, 2001b)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신용카드시장에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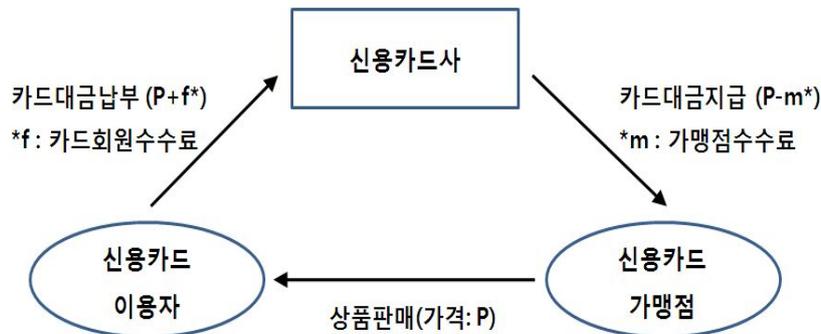
16) Callem(1992), Callem and Mester(1995)

3. 거래구조

가. 3당사자(Three-party)체제¹⁷⁾

- 3당사자체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발급 업무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
- 동 체제는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이용자로 구성되며 폐쇄형 구조로도 불림.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 해외 Amex, Diners Club 등이 3당사자체제를 채택

<그림 3> 3당사자체제



주 : 신용카드 회원수수료(f)는 포인트, 할인혜택과 같이 음의 값을 취할 수 있음.
 자료 : 전진(2009)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가맹점 확보, 인증망 확보, 고지서 발급, 전표 매입, 결제 처리, 채권 관리, 신용정보 수집 등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

17)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2008), 윤성훈·이경아(2009), 진재석(2009) 등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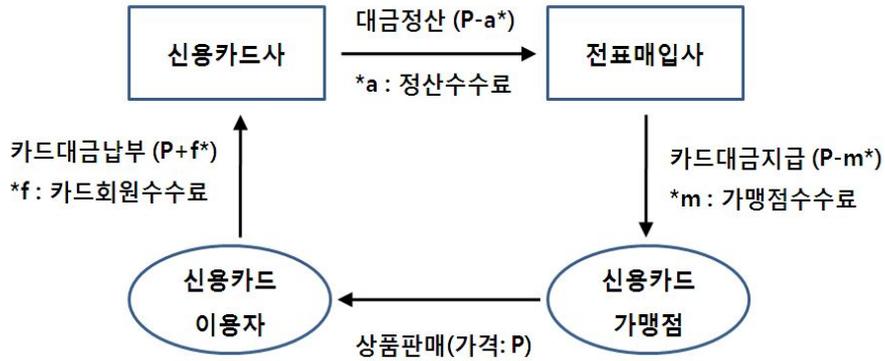
- 신용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업소에
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3당사자체제에서는 신용카드사별로 가맹점 확보, 관리비용 등
고정비용이 요구되어 투자가 중복되는 고비용 구조를 보임.
- 고정비용의 중복투자는 사회적 효용의 감소와 함께 자연적인 진
입장벽을 유발
 - 감독당국의 지시(1998.1.8)에 따라 여전법 제23조 제2항은 신용
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

나. 4당사자(Four-party)체제¹⁸⁾

- 4당사자체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전표매입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구조
- 동 체제는 신용카드사, 매출전표 매입사,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
카드 이용자로 구성되며 개방형 모형으로도 불림.
 - Visa, Master 등 전표매입사가 있는 미국, 호주, 영국 등이 4당
사자체제를 채택

18) 정찬우(2008)를 참고

<그림 4> 4당사자체제



주 : 신용카드사의 수입은 $(a+f)$, 전표매입사의 수입은 $(m-a)$ 가 됨.

자료 : 전진(2009)

- 카드결제 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와 전표매입사에 신용카드회원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부과하며 전표매입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를 부과
 - 정산수수료는 전표매입사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나 가맹점수수료에 전가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신용카드 가맹점과 전표매입사, 전표매입사와 신용카드사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된다면 가맹점수수료의 인하가 가능
 - 전표매입사에 가맹점 관리권이 부여되면 신용카드사에 대한 이들의 협상력이 커져 정산수수료 조정을 통해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가능
 - 그러나 소수의 전표매입사가 시장력(market power)을 가질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산수수료 조정이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IV. 신용카드 규제

1. 우리나라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현재 여전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¹⁹⁾
 - 여전법은 신용카드 시장의 진입 및 퇴출, 업무영역, 결제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여전법 제3조, 제19조, 제57조, 제70조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짐.
- 여전법 제3조와 제57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시장진입 및 퇴출에 관련된 신용카드업 허가²⁰⁾와 취소²¹⁾는 금융위원회가 결정
 - 금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여전법의 특정항목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제19조와 제70조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납 거부 및 수수료 전가를 금지
 - 여전법 제19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19) 1987년까지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규제됨.

2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3항

- 신용카드업자가 제19조 1항과 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0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해외 주요국²²⁾

가. 미국

- 미국은 신용카드시장을 1968년 제정된 연방법인 『소비자신용보호법』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으로 규제
- 『대부진실법』 (Truth in Lending Act)과 동 법의 세부내용을 정한 『Regulation Z』 에 전반적인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규제 명시
 - 신용카드 이자율, 수수료 조건, 신용조건의 주지의무, 채권압류의 제한, 소비자 신용정보의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미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²³⁾하자 『대부진실법』 과 『Regulation Z』 의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거래조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²⁴⁾
 -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평등신용기회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등에도 일부 신용카드 규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미국 감독당국²⁵⁾은 신용카드사의 불공정관행 개선 및 소비자

22) 김규수(2009), 진재석(2009), 최형선(2010), 한국은행(2007, 2010) 등을 참고

23) Ausubel(1991),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24) 최희식(2004) 참고

25) 연방준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저축기관감독청(OTS: Office of Thrift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신용카드 관련 개정안을 2010년 7월부터 시행 중²⁶⁾

-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Regulation AA』를 개정하였으며 신용카드 계좌 및 회전(revolving) 신용과 관련하여 『Regulation Z』를 개정
- 현재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신용카드업 영위를 위한 회사의 설립, 인가,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에 대한 규제 조항도 따로 없으며 현금할인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카드업은 주(state)법에 따라 주정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주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용자에의 수수료 전가를 주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 뉴욕 주는 상법(General Business Law) 제518조에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 금지와 처벌규정을 명시
 - 뉴욕이외에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총 10개 중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를 법으로 금지

나. 호주²⁷⁾

- 호주 중앙은행은 1998년에 제정된 『지급결제시스템 규제

Supervision),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26) 김규수(2009)

27) 김태진(2008), 진재석(2009), 윤성훈·이경아(2009)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에 따라 신용카드 시장의 제반사항을 규제

- 그러나 2002년 이전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부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산수수료를 인상하자 가맹점수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
- 호주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2년 『신용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Card Payment Systems Reforms)을 발표
 - 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은 ①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인하, ② 카드결제 시 부가수수료(Surcharge) 고객전가 허용, ③ 카드가맹점이 모든 카드를 수용해야 하는 원칙(Honor-All-Card Rule) 폐지, ④ 다른 지급수단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No-Steering Rule)한 조항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표 8> 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 주요 내용

개혁안	주요내용			
정산수수료 인하	-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 사이의 정산수수료 상한제 도입			
	구 분	규제실시 이전	2003년	2006년
	신용카드	0.95% 수준	최고 0.55%	최고 0.5%
	직불카드	0.55% 수준	거래 건당 \$0.15	거래 건당 \$0.12
카드가맹점 규제완화	- 카드결제 시 부가수수료 카드고객에게 전가 허용 - Honor-All-Card Rule 폐지 - No-Steering Rule 폐지			

자료 : 김태진, 「호주 중앙은행의 카드산업 규제와 시사점」, 『신용카드』, 2008.

-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가맹점수수료가 2003년 10월 1.4%에서 2007년 말에는 0.79%까지 인하되는 등 가맹점의 부담이 감소

- 이에 반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동 개혁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유보적임.
- 2006년 신용카드 연회비는 2001년에 비해 22~77% 인상되었고 연체수수료 및 한도초과 수수료 등도 큰 폭으로 인상

다. 영국

-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 1974)을 제정하여 신용카드 전반에 대한 규제를 실시
 - 동법은 신용에 대한 광고, 부당한 신용거래, 소비자신용과 관련한 신용 및 할부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
 - 2008년 신용카드시장의 경쟁력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신용법』 개정안이 전면시행
- 영국의 신용카드업은 『통합금융업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없이 감독기관에 사전 신고만으로 영위 가능
 - 할인점 등 일반기업은 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e)의 인가를 받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영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에 대한 규제를 따로 명시하지 않음.
 - 4당사자체제인 영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신용법』, 『경쟁법』 (Competition Act 1998)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음.

V.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개선논의

1. 신용카드 규제²⁸⁾

- 신용카드시장 체계의 개선을 위해 여전법 제19조와 제70조에 명시한 신용카드 수납 및 수수료 전가 금지 항목과 처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신용카드 수납 의무화를 명시한 여전법 제19조 제1항은 지급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거래당사자 중 하나인 가맹점의 지급수단 선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상품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
 - 신용카드 수납의 의무화를 완화할 경우 조세의 투명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의 의무화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전가를 금지한 여전법 제19조 제3항의 폐지를 통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높을 경우 수수료 일부가 상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이용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 가능하고 이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킴.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세 및 관세 납부 시 납세자가 신용카드

28) 김재진 (2008),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2008), 정찬우(2008), 최형선 (2010) 등을 참고

수수료를 부담

- 김재진(2008)은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²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법 제19조와 제70조의 폐지는 성급한 제도개선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 및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정찬우(2008)는 동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완전폐지보다는 소액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의무 완화, 현금이용자에 대한 가격차별화 허용 등을 통해 순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2. 가맹점수수료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 이용자가 증가함으로써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
-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별로 차등화 되어 있어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의 업종별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이견이 존재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를 배경으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³⁰⁾
- 소득공제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

29) 미국과 영국에서도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가 시행중이며 미국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30)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2008), 정찬우(2008), 윤성훈·이경아(2009)

약화를 가중

- 신용카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 간의 과당경쟁이 일어날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탈퇴는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탈퇴가 쉽지 않음.
- 가맹점수수료가 상품가격에 일부 반영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카드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 일부에서는 여전법 제3조 제1항, 제3항 등이 신용카드사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³¹⁾
- 만약 신용카드 가맹점 탈퇴가 쉽지 않은 시장구조일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유인이 더욱 줄어들.
-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고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
-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도 신용카드 이용자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액 일정부분이 소득세 공제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0분의 132)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고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
-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은 2007년부터 영세가맹점 및 재래시장 가맹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유도

31) 윤성훈·이경아(2009)

32) 음식점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0분의 2

- 2010년 4월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됨.
 - 재래시장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³³⁾에 대해서 1.6~1.8%로 인하
 -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2.0~2.15%로 인하

<표 9>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사례

시기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07년 8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2.0~4.5%	2.0~2.2%
	신용카드 일반가맹점	1.5~4.5%	1.5~3.6%
	체크카드	1.5~4.5%	1.5~2.3%
2008년 10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평균 2.74%	평균 2.57%
2009년 2월	신용카드 재래시장	2.0~3.6%	2.0~2.2%
2010년 4월	신용카드 재래시장	2.0~2.2%	1.6~1.8%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평균 2.57%	2.0~2.15%

자료 :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한국은행(2010)

3.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

가. 가맹점수수료 인하

- 보험회사는 평균 3.00%(2.60~3.24%)인 가맹점수수료가 백화점 등 타 업종에 비해 높아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 건당 150원인 계좌이체(자동이체) 수수료에 비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
 -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보험료 수납이 이루어지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및 장기보험상품에 국세 및 관세 수준의 수수료인

33) 금융위원회는 재래시장 가맹점 및 연간 매출규모가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 현황은 관계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라고 발표

1.20%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³⁴⁾³⁵⁾

- 신용카드사는 현재 보험회사의 가맹점수수료는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
 - 가맹점수수료는 최초 가입 시 설정된 것이 적용되지만 이후 결제 금액에 연동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되어 현재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실질 수수료는 백화점 등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주장³⁶⁾

나. 장기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대상 제외

-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제외대상 포함여부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을 당시 활발하게 논의됨.
 -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금융상품을 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과 ②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으로 정의
- 보험회사는 장기보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 금융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의 장기보험상품에서 저축(적립)보험료의 비중이 위험보험료보다 높아³⁷⁾ 은행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주장

34)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6조 2호(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35)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36) 박인철(2010)

37)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FY08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는 위험보험료 20.1%, 저축보험료 57.9%이며 사망보험(종신, 건강 등)의 구성비는 위험보험료 19.7%, 저축보험료 50.6%임.

- 그러나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수납이 허용된 보험상품을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보험료 결제 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계약은 사적 자치계약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보험상품을 포함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 시 신용카드 수납 대상 보험상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
- 최근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결제 대상 상품과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결제 대상 상품으로 정기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상품만 포함시키고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
 - 또한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국세 및 관세 수준인 1.2%까지 인하하는 것을 요구
 -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가맹점 탈퇴도 고려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일부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제외는 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하며 현재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
- 현재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를 수납하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가맹점수수료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대상 상품과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

VI. 시사점 및 결론

- 여전법 제3조와 제19조에 명시된 신용카드 수납 거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금지에 대한 완화 및 삭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
 - 여전법 조항의 개선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
 - 또한 제Ⅲ장 해외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 및 지급수단별 가격차별화를 허용하는 추세
 - 마지막으로 지급수단의 선택은 소비자의 효용의 증대도 가져오는 만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함께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김재진(2008)도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³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하가 필요
 -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인 2.22%보다 낮은 수준
 - 프랑스(0.7%), 호주(0.8%), 덴마크(0.9%)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 미만이며 나머지 국가도 2.0%를 넘지 않음.

38) 미국과 영국에서도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가 시행중이며 미국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표 10> 해외 주요국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단위: %)

국가	수수료
프랑스	0.70
호주	0.80
덴마크	0.90
벨기에, 스페인, 영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독일	1.50~1.70
미국, 캐나다	2.00
스위스	2.80

자료 : 한국은행(2010)

- 과도한 수수료는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신용카드시장을 왜곡시켜 신용카드시장의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격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사가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모두 수수료 협상에서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음.
-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 가맹점수수료는 상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기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2%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 이용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회사도 카드 수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문헌

- 김규수, 「미국과 영국의 신용카드 관련 제도 현황 및 최근 동향」 『여신금융』, 제17호, 여신금융협회, 2009.3.
- 김태진, 「호주 중앙은행의 카드산업 규제와 시사점」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2008.12.
- 박영근, 신지선,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현황과 시사점: 대부진실법과 Regulation Z를 중심으로』, 업무참고자료, 한국은행, 2008.2.
- 박인철, 「보험료 카드결제 논쟁의 해법」 『Card Business Brief』, 제10-6호, Vol. 49, 비씨카드, 2010.6.
- 오영수, 「보험제도 선진화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정책세미나 자료, 보험연구원, 2008.11.
-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2008.9.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차 일부개정 제10062호, 2010.3.
- _____, 시행령, 일부개정 제22196호, 2010.6.
- 윤성훈,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분석』, 제9권, 제4호, 한국은행, 2003.
- 윤성훈·이경아,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 『주간이슈』, 제62호, 보험연구원, 2009.12.
- 장선구, 『한국신용카드 시장의 양면성 구조와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성균관대학교, 2008.4.
- 전진, 「미국과 호주의 카드산업 규제현황 및 대책」 『여신금융』, 제18호, 여신금융협회, 2009.6.
- _____, 「신용카드산업의 양면시장적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2008.9.
- 정찬우,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8.12.
- _____,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5.3.
- 진재석, 「카드제도의 주요 쟁점 동향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2009.10.
- 최형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에 대한 논의」 『주간이슈』, 제77호, 보험연구원, 2010.4.

- 최희식, “미국 신용카드의 가격정책 변화와 규제 동향”,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2004.
- 한국은행, 「주요국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및 시사점」, 『지급결제정보』, 제 2010-3호, 금융결제국, 2010.4.
- _____, 『지급카드 수수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지급결제조사자료 2007-1, 금융결제국, 2007.9.
- Ausubel, L.,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1, 1991, pp.50~81.
- _____, "Adverse Selec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 mimeo, University of Maryland, 1999.
- Black, S. and D. Morgan, "Risk and The Democratization of Credit Cards", Research Paper No. 9815, FRB of New York, 1998.
- Bardford, T., "Developments in Interchange Fee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L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2008.
- Calem, P., "The Strange Behavior of the Credit Card Market", FRB of Philadelphia, 1992.
- Calem, P. and L. Mester, "Consumer Behavior and the Stickiness of Credit Card Interest R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1995.
- Gross, D., and N. Souleles, "Do Liquidity Constraints and Interest Rates Matter for Consumer Behavior? Evidence from Credit Card Data", NBER Working Paper #8314, 2001a.
- _____, "An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Bankruptcy and Delinquency", NBER Working Paper #8409, 2001b.
- Hayashi, F., "Payment Card Interchange Fees and Merchant Service Charg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Lydian Payments Journal*, 2010.
- Park, S., "Effects of Price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Industry", *Economics Letters*, Vol. 32, 1984, pp.393~410.

저 자 약 력

최 형 선

University of Iowa, 경제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schoi@kiri.or.kr)

CEO Report 2010-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발행일	2010년 11월 일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
(☎3775-9028)로 하여 주십시오.